

신용정보 · 개인정보보호세칙

제 정 2016. 9. 28.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3.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4.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출판물, 방송매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보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7.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8. “정보처리”란 정보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과기 등을 말한다.
 9. “정보취급자”란 은행의 지휘·감독을 받아 은행 내 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①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본부장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서 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②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부서장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③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보고 및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 처리의 원칙)

- ① 은행은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용정보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처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6.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1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2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할 수 없다.
- ④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취급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또는 임직원에 관한 사항·채용 등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목적으로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파기)

- ①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및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보의 안전보호)

- ①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협에 대하여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세워야 한다.
- ② 은행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를 중심으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신용정보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은행은 신용정보의 처리 및 보호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4. 개인신용정보 관련 수집·이용·제공·폐기 기록

제10조(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은행은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활용체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은행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은행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전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2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개인신용정보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전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전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은행이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신용정보의 수집·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위임전결세칙에 따라 제·개정된 동의서에 해당 개인신용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라 동의가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2.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3.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경우
- ② 전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11조 제2항 또는 제12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하는 절차서에 따른다.

제15조(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가 법령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은행은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은행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

은행은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하며, 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침해사고 대응)

- 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정하는 절차서에 따른다.
- ②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된 경우에는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의 책임)

- ① 은행은 신용정보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영상정보의 관리)

① 은행은 영상정보처리기를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의 목적으로 설치한다.

② 은행은 전항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안업무 담당부서장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로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안업무 담당본부장이 정하는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기타 적용 및 위임)

① 이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용정보법령,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 9. 3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관련 법령 및 내규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정보는 이 세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내규의 폐지)

개인정보보호세칙, 신용정보관리·보호세칙은 폐지한다.

제4조(다른 내규의 개정)

개인영상정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인정보보호세칙 제15조(위임)” 를 “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세칙 제21조 제4항” 으로 하고, 제3조 중 “세칙 제12조” 를 “세칙 제21조 제1항” 으로 한다.